

## 충주시장애인체육회 장애인생활체육지도자 채용 공고

『시민의 건강한 행복 도시 충주』 건설과 장애인들의 건강증진과 건전한 여가생활을 선도할 유능하고 참신한 『장애인 생활체육지도자』를 공개 채용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 07. 9.

충주시장애인체육회장



### 1. 채용 분야 및 인원

- 채용분야 : 장애인 생활체육지도자
- 채용인원 : 1명
- 채용종목 : 테니스, 축구, 배구중
- 채용현황

분 야	인 원	종 목	신분	자격조건	비고
장애인 생활체육 지도자	1명	테니스 축 구 배 구 중	무기 계약직	- 장애인스포츠지도사 2급 이상 자격증 소지자	
			조건부 계약직	- 스포츠지도사 - 건강운동관리사 - 유소년스포츠지도사 - 노인스포츠지도사	

※ 조건부계약직으로 우선 채용 후 2년 이내(2회차 이내) 장애인스포츠지도사 자격증을 취득 해야 함.

※ 조건부 계약직 채용 후 계약기간 종료 전 장애인스포츠지도사 자격 취득 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 할 수 있으며, 자격증 미취득 시 계약 해지 됨

## 2. 응시자격 및 결격사유

○ 성별, 신체조건, 용모, 학력 등 제한 없음

※ 공고일 기준 만 18세 이상 ~ 만 60세 미만인자 장애인생활체육지도자 정년에 해당하지 않는 자

○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 제6항에 따른 체육지도자 자격을 취득한 자

○ 공고일 이전부터 최종시험(면접)일까지 계속하여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대한민국으로 되어 있는 자

○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자로서 해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 신체검사 불합격 판정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자

○ 「장애인생활체육지도자 운영 지침」 제12조(채용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10. 채용 결격사유 참조)

## 3. 신분 및 근무조건

○ 근로기간 : 2024. 8. 1 ~

○ 고용형태 : 무기계약직 및 조건부계약직

○ 근무장소 : 충주시장애인체육회

○ 근무시간 : 09:00~18:00(1일 8시간, 중식 시간 제외) 주40시간 근무

○ 보 수 : 월 기본급 2,185천원 ※ 수당 별도

- 수당: 급식보조비, 교통비, 명절휴가비, 초과근무수당, 가족수당, 근속기산금, 월액여비 등

※ 기타사항은 「장애인생활체육지도자 운영 지침」 적용

#### 4. 주요업무

- 종합적인 장애인 생활체육 기획, 정책 발굴 및 프로그램 개발
- 장애인에 대한 생활체육활동 지도
- 장애인생활체육교실 및 동호인클럽 활동조사, 지도 및 관리
- 생활체육 프로그램 정보제공, 기획 및 보급(홍보), 지도
- 연간, 분기별로 생활체육활동 지도계획서 작성
- 지도활동 및 생활체육 관련 상담·행정 업무
- 기타 찾아가는 장애인생활체육서비스 업무추진

#### 5. 채용일정

- 채용일정

채용공고	원서접수	서류전형 (합격자발표)	면접시험 (수업지도안 발표, 적성면접)	최종합격자 발 표
24.07.09(화)~ 07.17(수)	24.07.09(화)~ 07.17(수)	24.07.18(목)	24.07.22(월)	24.07.25(목)

※ 채용일정은 본회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시험장소 및 합격자 발표 등 변경사항은 개별 통보 및 충주시장애인체육회 홈페이지에 게재

#### 6. 제출서류

- 지원서 1부(사진2매 부착) [제1호 서식]
  - ※ 3개월 이내 촬영한 동일원판의 탈모 상반신 사진(3.5cm×4.5cm) 부착
- 이력서 1부 [제2호 서식] 및 자기소개서 1부 [제3호 서식]
- 지도종목 수업지도안 1부 [제4호 서식]
- 응시자격 결격사유 확인서 1부 [제5호 서식]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 [제6호 서식]
  - 스포츠지도사 자격증 사본(또는 발급예정증명서) 1부
  - 경력증명서 및 자격확인서(해당자) 1부
  - 기타 자격증(수화통역사, 운전면허증 등) 사본 1부
  - 장애인복지카드(해당자) 1부
  - 최종학교 졸업(예정)증명서 1부(최종합격자에 한함)
  - 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 등본 각 1부(최종합격자에 한함)
  - 『공무원채용 신체검사 규정에 의한』 채용신체검사서 1부
- ※ 모든 제출 서류는 3개월 이내 발급서류만 인정

## 7. 공고 및 접수방법

- 공고기간 : 2024. 07. 09.(화) ~ 07. 17.(수) / 7일간
- 공고방법 : 본회 및 유관기관 홈페이지에 공고 게시
- 접수기간 : 2024. 07. 09.(화) ~ 07. 17.(수) / 7일간
- 접수방법 : 방문접수 및 우편(등기)접수
  - 지원서 서식 : 채용공고에 첨부된 지정서식 사용  
(<http://www.cjpc.kr>) [참여마당-고사·공고]에서 다운로드
  - 근무시간(09:00~18:00) 내 접수 가능
  - ※ 점심시간(12:00~13:00) 제외
  - 우편접수는 택배, 퀵서비스가 아닌 등기우편으로만 가능하며,  
접수 마감일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하며,
  - 접수기간 내 유선으로 접수 여부를 확인하고 접수번호를 부여 받아야 함.  
(우편 접수자의 접수증 및 수험표는 2차 전형일 현장 교부 함.)
- 접 수 처 : 충주시장애인체육회 총무팀(043-856-0351)
  - 충청북도 충주시 대림로 85(호암동) 충주종합운동장 내(8번게이트)

## 8. 전형 방법

### ○ 1차 시험 : 서류전형

- 직무 수행에 관련된 자격·경력 등 적합여부를 서면으로 심사하여 합격 인원은 선발인원의 4배수 이상으로 한다.

단, 지원자의 수가 선발 인원의 4배수 이하일 경우 서류전형을 면제한다.

### ○ 2차 및 3차 : 수업지도안 발표 및 적성면접 평가

- 1차 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2차, 3차 전형을 통합하여 실시하며 시험성적의 고득점자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함.
- 수업지도안 발표(50점), 적성면접 평가(50점)

### ○ 채용시험에 부정행위를 한 사람은 해당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한다.

### ○ 최종 합격자 결정

- 2차 시험과 3차 시험을 합산한 시험성적이 60점 미만인 자는 불합격 처리한다.
- 동점자 발생 시 다음 순위에 따라 결정 한다.
  - 1순위 : 2차 시험의 고득점자
  - 2순위 : 3차 시험의 고득점자
  - 3순위 : 장애인체육회 면접위원회 결정자
- 합격결정 후에도 제출 서류에 허위사실이 있거나, 부적합한 결격사유가 있을 시 합격 또는 채용이 취소될 수 있음.
- 최종합격자 후순위자로 예비합격자 2명이내 선발
  - 최종합격자 임용 포기, 결격사유 등으로 인한 합격 취소, 임용 3개월 이내 퇴사 시 예비합격번호 순으로 충원할 수 있다.

## 9. 가점 대상자 및 가점

○ (장애인생활체육지도자 운영지침 제8조 제1항)

가점대상	우대사항
교육대학(원), 사범대학((대학의 (특수) 교육과·체육교육과), 특수체육관련 학과 졸업자(졸업예정자 포함)	제1차 및 제2차 시험 만점의 10% 가점
대한장애인체육회 회원종목단체가 주최하는 전국대회 입상자	
대한장애인체육회 회원종목단체의 등록선수 출신	제1차 및 제3차 시험 만점의 5% 가점
국제대회 입상자	제1차 및 제3차 시험 만점의 10% 가점
청년층(만 34세 이하), 취업취약계층(저소득층, 장애인, 6개월 이상 장기실직자, 한부모가족 지원법 보호대상자, 북한이탈주민, 결혼이민자, 성매매피해자, 위기청소년, 갱생보호대상자, 여성가장, 노숙인)	
(장애인)국가대표 출신	제1차 및 제3차 시험 만점의 15% 가점

※ 가점 사유가 중복되는 경우 가장 높은 가점 하나만을 적용한다.

## 10. 채용 결격사유

### 충청북도장애인체육회 장애인생활체육지도자 운영지침 제12조(결격사유)

제12조(채용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지도자로 채용될 수 없다. 채용 이후 그와 같은 사실이 발견된 경우에는 당연퇴직 한다.

1. 「국민체육진흥법」 제11조의5(체육지도자의 결격사유)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국민체육진흥법」 제12조(체육지도자의 자격취소 등) 또는 법원의 판결에 따라 지도자 자격이 정지 또는 취소된 사람
3. 타 체육단체(「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9호의 각 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를 말한다) 재직 시 부패행위, 비위행위 등으로 파면 또는 해임된 사람
4. 타 체육단체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지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국민체육진흥법 제11조의 5(체육지도자의 결격사유)

제11조의5(체육지도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체육지도자가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2.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금고 이상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하거나 벌금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5. 선수를 대상으로 「형법」 제2편제25장 상해와 폭행의 죄를 저지른 체육지도자(제12조제1항에 따라 자격이 취소된 사람을 포함한다)로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 제12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라 자격이 취소(이 조 제1호에 해당하여 자격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 한다)되거나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자격검정이 중지 또는 무효로 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 국민체육진흥법 제12조(체육지도자의 자격취소 등)

제12조(체육지도자의 자격취소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체육지도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12조의2에 따른 체육지도자 자격운영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그 자격을 취소하거나 5년의 범위에서 자격을 정지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체육지도자의 자격을 취득한 경우
2. 자격정지 기간 중에 업무를 수행한 경우
3. 체육지도자 자격증을 타인에게 대여한 경우
4. 제11조의5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5. 선수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를 한 경우
6. 선수에게 성희롱 또는 성폭력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7. 제11조의6제1항에 따른 재교육을 받지 아니한 경우
8. 그 밖에 직무수행 중 부정이나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 ② 삭제

- ③ 자격검정을 받는 사람이 그 검정과정에서 부정행위를 한 때에는 현장에서 그 검정을 중지시키거나 무효로 한다.
- ④ 제1항에 따라 체육지도자 자격이 취소된 사람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체육지도자 자격증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 ⑤ 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적인 기준 및 절차는 그 사유와 위반 정도를 고려하여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9. “체육단체”란 체육에 관한 활동이나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이나 단체를 말한다.
  - 가. 제5장에 따른 대한체육회, 시·도체육회 및 시·군·구체육회(이하 “지방체육회”라 한다), 대한장애인체육회, 시·도장애인체육회 및 시·군·구장애인체육회(이하 “지방장애인체육회”라 한다), 한국도핑방지위원회,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 나. 제11호에 따른 경기단체
  - 다.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국기원 및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태권도진흥재단
  - 라. 「전통무예진흥법」 제5조에 따른 전통무예단체
  - 마. 「스포츠산업 진흥법」 제20조에 따른 사업자단체
  - 바.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른 체육시설업협회
  - 사. 국내대회, 국제대회 등 대회 개최를 위하여 설립된 대회조직위원회
  - 아. 그 밖의 체육활동 법인 또는 단체

## 11. 기타사항

- 지원서는 접수 마감기한까지 모든 작성을 종료하고 최종 제출하여 정상적으로 접수번호를 부여받은 경우에만 인정함.
- 지원서 허위 기재, 기재 착오, 누락, 소정 양식 미준수, 구비서류 미제출, 연락 불가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책임으로 하며, 응시자가 제출한 서류의 기재 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때에는 임용 후에도 합격을 취소함.
- 각종 증빙서류는 필요 시 관계기관에 사실여부 확인 예정이며, 모든 지원자는 조회에 필요한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함.
- 신체검사 및 신원조회 결과 결격사유 발생 시 합격을 취소함.
- 지원서 접수결과 채용분야의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음.
- 채용 과정에서 비위 사실이 발견될 경우 언제든지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으며, 향후 5년간 신규 채용 지원 자격을 제한함.
- 응시자는 최종합격 후 채용일 즉시 근무 가능하여야 하며, 근무가 불가능한 경우 합격이 취소됨.
- 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 합격취소, 임용 결격사유 등으로 결원을 보충해야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차순위자를 추가합격자로 선정할 수 있음.
- 채용일정 등은 제반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응시자에게 개별 통지하거나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함.
- 제출된 서류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에 따라 최종합격자 발표일 이후 15일 이내 반환 청구할 수 있으며, 청구기관 경과 후 『개인정보보호법』에 의거 파기됨.
- 지원서에 e-mail 주소와 휴대전화 번호를 반드시 기재 바라며,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충주시장애인체육회 총무팀(☎ 043-856-0351)

〔제1호 서식〕

# 지 원 서

접수번호	미기재
응시분야	장애인생활체육지도자

3.5cm×4.5cm 사 진	인 적 사 항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휴대전화 (전자우편)	연락처 :		
			e-mail :		
		자 격 증			

본인은 충주시장애인체육회 장애인체육지도자 모집에 응모코자 지원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날인)

충주시장애인체육회장 귀하

## 접 수 증

접 수 번 호	2024 -
응 시 분 야	장애인생활체육지도자

■ 성 명 :

■ 생년월일 :

년 월 일

충주시장애인체육회장 직인

## 응 시 표

3.5cm×4.5cm 사 진	접수번호	2024 -
	응시분야	장애인생활체육지도자
	생년월일	
	성 명	
전공종목		

년 월 일

충주시장애인체육회장 직인

〔제2호 서식〕

# 이 력 서

접수번호	미기재
------	-----

<b>□ 기본사항</b>	
성 명	(한글)
연 락 처	(본인휴대폰) <span style="float: right;">(비상연락처)</span>
주 소	

<b>□ 경력사항</b>			
근 무 기 간	기 관 명	직 책	담 당 업 무
~			
~			
~			
~			
~			
※ 근무기간, 담당업무, 등 경력증명서 내용과 일치하도록 기재 ※ 최근 경력 순으로 기재하되, 필요시 별지 사용이 가능함			

<b>□ 자격사항</b>			
자격증(시험)명	취득(응시)일	발급(등록)번호	발행처
※ 장애인생활체육지도자 자격증, 수화통역사, 운전면허증 등 작성			

【제3호 서식】

## 자 기 소 개 서

응시분야	장애인생활체육지도자	성 명	자필서명
<p>&lt;작성요령&gt;</p>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분량은 A4용지 2매 이내로 하며, 워드프로세서를 사용하여 작성</li><li>- 글씨체 휴먼명조, 글씨크기 13포인트, 줄간격 160%</li><li>- 성격의 장·단점, 지원동기, 본인의 직업관, 기억에 남는 경험, 조직 구성원으로서의 포부 등 서술</li><li>- 작성자 서명은 자필 서명</li></ul>			

※ 작성 시 학교명, 출생지, 부모직업 등 개인 신상을 직·간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기재할 경우 불이익(감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4호 서식〕

## (            )종목 수업지도(안)

### 수업지도(안)

수업지도안을 작성하시오

수업지도 방법 및 지도현장의 위기 대처법 등

## 응시자격 결격사유 확인서

연번	내 용	해당	비해당
1	공고일 현재 만60세 미만인 자로 장애인생활체육지도자 정년에 해당하지 않는 자		
2	공고일 이전부터 최종시험(면접)일까지 계속하여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대한민국으로 되어 있는 자		
3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자로서 해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4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 신체검사 불합격 판정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자		
5	<p>장애인생활체육지도자 채용 결격사유가 없는자 (장애인생활체육지도자 운영지침 제12조)</p> <p>○ 「국민체육진흥법」 제11조의5(체육지도자의 결격사유)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피성년후견인</li> <li>2.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li> <li>3.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li> <li>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금고 이상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하거나 별급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li> <li>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li> </ul> </li> <li>5. 선수를 대상으로 「형법」 제2편제25장 상해와 폭행의 죄를 저지른 체육지도자(제12조 제1항에 따라 자격이 취소된 사람을 포함한다)로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li> <li>6. 제12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라 자격이 취소(이 조 제1호에 해당하여 자격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되거나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자격검정이 중지 또는 무효로 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li> </ol> <p>○ 「국민체육진흥법」 제12조(체육지도자의 자격취소 등) 또는 법원의 판결에 따라 지도자 자격이 정지 또는 취소된 사람</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체육지도자의 자격을 취득한 경우</li> <li>2. 자격정지 기간 중에 업무를 수행한 경우</li> <li>3. 체육지도자 자격증을 타인에게 대여한 경우</li> <li>4. 제11조의5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li> <li>5. 선수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를 한 경우</li> <li>6. 선수에게 성희롱 또는 성폭력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li> <li>7. 제11조의6제1항에 따른 재교육을 받지 아니한 경우</li> <li>8. 그 밖에 직무수행 중 부정이나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li> </ol> <p>○ 타 체육단체(「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9호의 각 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를 말한다) 재직시 부패행위, 비위행위 등으로 파면 또는 해임된 사람</p> <p>○ 타 체육단체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지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p>		

※ 결격사유 내용을 확인하고 해당, 비해당란에 (✓)로 표기.

본인은 충주시장애인체육회 장애인생활체육지도자 채용 응시자격에 대한 결격사유를 확인하고 위와 같이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성 명 :

(서명)

충주시장애인체육회장 귀하



〔제7호 서식〕

## 채용서류 반환청구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청구인	성명	수험번호
주 소		
반환장소 (주소와 다른 경우 기재)		
반환청구서류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및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인)

### 충주시장애인체육회 귀하

#### 공지사항

1.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라 신청인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요청하면 해당 사업장은 14일 이내에 반환요구서류를 발송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라 반환요구서류는 특수취급우편물을 통해서 전달받거나, 사업장으로부터 직접 전달받을 수 있습니다.
3.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2항에 따라 채용서류의 반환에 드는 비용을 청구인이 부담할 수 있습니다.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